

**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
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**

-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「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」 사업비 14억원을 2004년도로 이월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내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, 즉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,
 -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.
 - 따라서 동 명시이월사업은 지난 2003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심의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동 사업이 누락되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추가 제출된 것임.
-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
 - 동 명시이월사업은 파주 장단콩 축제장 조성을 위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643번지 외 16필지 36,390평방미터(11,012평)의 토지를 신규 취득하여 전용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도비지원 사업임.

-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와 74회 임시회 시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전용축제장의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매입비용 과다문제, 군부대 동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케 된 사업임.
 - 본 사업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전용 축제장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
 - 아울러, 동 명시이월사업이 누락됨으로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사업비 예산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그러나, 금번사례와 같이 예산편성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, 의회활동 중 중요한 정례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